

의안 번호	46
----------	----

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2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46호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4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7.

2. 제안이유

가. 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낙상예방을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 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제고하고자 2021년 9월 성북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였음.

나.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북마을관리소 민간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고령자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와 사후관리의 지속적 제공, 2023년 조성 예정인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의 관리와 운영 등 성북마을관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제3항 및 제10조(계약체결 등) 제2항에 의거 성북구의회는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: 성북마을관리소

- 위 치 : 성북구 정릉로38라길 32(정릉동)
- 규 모 : 지상1층(연면적 36㎡) 모든 시설물과 장비

나. 위탁기간 : 2023.01.01. ~ 2025.12.31.(3년)

다. 위탁사무 : 성북마을관리소 관리·운영

- 어르신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제공
- 집수리 공구 무료 대여
-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
-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교육
-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(희망아지트) 관리·운영

라. 수탁자 선정방법

-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심의·의결을 통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함.
- 단,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 시 공개모집 공고 후 신청법인 적격 심사하여 재위탁 선정(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득점자 선정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1)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제10조(계약체결 등)

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(개정 2016.12.29.)

5. 검토의견

□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성북마을관리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·운영사무를 재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라 함)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2022년 12월 31일자로 ‘성북마을관리소’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체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이며, 선정심의위원회 부적격 시, 공개모집 공고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‘성북마을관리소’는 어르신 낙상예방과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,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1년 9월 설치 운영하는 시설임.
- 민간위탁하려는 ‘성북마을관리소’운영에 관한 사무 내용과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음.
 1. 어르신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제공
 2. 집수리 공구 무료 대여
 3.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
 4.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교육
 5.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(희망아지트)관리·운영

<위탁시설 현황 및 소요예산>

시설명	소재지 (면적)	개소일	위탁체 (재계약)	위탁기간	운영 인력	소요예산
성북마을 관리소	정릉로38라길 32 (26.21㎡)	2021.9.15	주식회사 에이징인플 레이스	2023.1.1.~ 2025.12.31.	3명	인건비 : 125,978천원 운영비 : 17,400천원 사업비 : 68,200천원 합 계 : 211,578천원

<마을관리소 운영 '어르신 케어 안심 주거서비스' 추진 실적>

○ 서비스 항목

①주거서비스					②공구대여		③집수리 주민교육	
신청가구	완료	진행중	지원품목	시공건수	대여횟수	대여품목	상반기	하반기
192가구	156가구	36가구	31종	272건	67회	157개	10명	50명

○ 서비스 지원가구 현황(가구수)

장애가 구	가구형태			정부지원			주택형태				
	독거	부부	기타	기초생활수급	차상위	일반저소득	다구	단독	아파트	연립	기타
38	157	17	18	142	12	38	94	16	36	41	5

□ 민간위탁(재계약)의 적정성 검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10조제2항 및 제3항1)에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재계약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재계약 추진은 절차상 적정하다고 사료됨.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계약체결 등)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(개정 2016.12.29.)

- 또한 성북마을관리소 관리 운영사무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개조 등 종합 주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로써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, 사후관리의 지속적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계약 추진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「민간위탁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